

2021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1. 공통 안내사항

I. 2021년도 주요 변경 내용	4
II. 2021년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6
III. 공통 안내사항	7
IV.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안내	13

2. 2021년 지원사업 2차 공모 내용

I.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6
II. 예술공간지원	20
III. 제주원로예술인지원	23
IV.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25
V. 예술활동기록지원	27
VI. 예술창작준비지원	29
i. 창작활동준비지원	29
ii. 창작역량강화지원	31
VII. 국제예술교류지원	33

1. 공통 안내사항



- I. 2021년도 주요 변경 내용
- II. 2021년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III. 공통 안내사항
- IV.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안내

2021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우리 재단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부당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도 주요 변경 내용

□ 제도적 측면

1. 지원신청서 작성 부담 완화

- 지원신청자(단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류 양식 보완 및 간소화
- 지원신청서에 심의기준표와 예산편성표(예시)를 첨부, 작성 시 편의 제공
- (유효기간내)예술활동증명으로 주요활동실적 증빙서류로 대체
(예술활동증명 미발급자는 종전대로 주요활동실적 제출)

2. 지원사업 회계검사제도 자율 운영

- 1,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검사제도 의무화 폐지,
지원신청자(단체)의 사업예산내 회계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
- ※ 단, 회계검사 수수료는 필요 시 지원사업예산으로 사용 가능

3. 예술인 생태계 안전망 강화

- 예술인고용보험, (공연예술분야)상해보험 가입관리 의무화
-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
(「예술인고용보험법」 2020.12월 시행)
※ 세부지침은 추후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고용보험료'예산편성 인정(사업주 부담 0.8% 한)

4.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

- 이 제도는 예술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예술인 스스로 결정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제출서류는 마감 시 별도 조정없이 심의가 진행되며,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적 측면

1. (신설) 창작과정 중심의 지원사업

- ① 예술인(단체)의 창작발표 전 준비와 구상단계 ‘예술창작준비지원’ 유형 신설
 - 창작역량강화지원: 지원자(단체)의 예술역량강화 위한 연수과정 등 지원
 - 창작활동준비지원: 창작 설계단계의 활동(리서치, 워크숍, 인터뷰 등) 지원
- ② 예술인(단체)의 활동경력을 기록화하는 ‘예술활동기록지원’ 유형 신설
 - 예술활동기록지원: 예술인(단체) 스스로 예술창작활동을 기록·정리, 결과물 생성

2. (확대·변경) 사업유형 정교화

구분	주요내용	2020년	→	2021년
확대	제주원로예술인지원사업 유형 세분화 (구 제주원로예술인회고사업)	지원내용 ① 회고지원사업		지원내용 ① 구술채록지원 ② 회고지원사업 ※ 구술채록지원 선정사업은 다음연도 회고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변경	사업명 변경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사업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지원사업 해녀문화우수예술창작지원사업		제주원로예술인지원사업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사업 해녀문화예술지역특성화지원사업

3. 지원사업의 발표 양식 다각화

- 2020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예술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작품 발표 양식 외에 야외 공간을 활용한 예술 활동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활동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예술활동 지원

4. 기획서 지원공모(2020년)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사업’ 선정 사업 중 우수 기획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획서 내용으로 2021년도 지원사업 공모 시 심의 가점 부여 (2점)

2021년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지원사업 유형			지원신청 분야				지원 자격		지원 기간	공모 일정	소관 부서
			문 학	시 각	공 연	다 원	개 인	단 체			
Ⅰ.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	예술창작 활동지원	a.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	●	●	●	●	—	단년	1. 11. ~ 1. 25.	예술 지원팀
		b.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	●	●	●	●	●			
		c.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	●	●	●	●	●	단년		
		d.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	●	●	●	●	●	다년		
		e. 제주원로예술인지원	●	●	●	●	●	●			
		f.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	●	●	●	●	●			
		g. 예술활동기록지원(신설)	●	●	●	●	●	●			
	예술창작 준비지원	a. 창작활동준비지원(신설)	●	●	●	●	●	●	단년	2. 3. ~ 2. 1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2.10. ~ 2.24.)	
		b. 창작역량강화지원(신설)	●	●	●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	—	●			
	예술공간 지원	a.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	●	●	●	●	●	●			
		b.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	●	●	●	●			
		c.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	●	●	●	●	●	●			
청년문화매개특성화 사업			●	●	●	●	●	●	단년	별도 공모	미래 문화팀
Ⅱ. 국제예술 교류 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	●	●	●	●	●	단년	2. 3. ~ 2. 17.	예술 지원팀
Ⅲ. 지역문화 활성화	해녀문화예술지역특성화지원 ※ 2021년은 지역과의 협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	●	●	●	●	●	단년	2월중	지역 문화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	●	●	●		●	단년	2월중	일상 문화팀

※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

※ 제주문화예술교육사업(소관부서: 문화예술교육팀)은 별도 공지



공통 안내사항

1. 공모 및 사업기간

(1) 2차 공모

- 공모기간 : 2021. 1. 29.(금) ~ 2. 17.(수) 18:00
- 접수기간 : 2021. 2. 3.(수) ~ 2. 17.(수) 18: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접수기간 : 2.10.(수)~2.24.(수) 18:00)
- 사업기간 : 2021. 3. 1.(월) ~ 12. 31.(금)

2. 지원신청 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개인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된 개인은 최종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격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사업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기초예술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증빙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제출

3. 지원신청 부적격자

(1) 지원신청 개인(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신청 주체인 공공 공연장은 예외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이들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가능)
※ 단, 대학(교)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 가능(졸업예정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 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신청접수 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단체
 - ※ 전년도(2020년) 11월~12월 사업을 추진한 개인·단체는 2021년 2월까지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정산완료 전 2021년도 지원금 교부 불가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
 -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포기 등)는 예외로 함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4.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부적격 시 처리 방법

(1)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 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2)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직접 지원 사업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5. 지원사업 예산편성 안내

(1)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함

※ 단, 일부 사업유형은 운영경비 지원 가능

(2) 교부 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단,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사전사업에 대해서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선정된 신청인·단체가 사업수행 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규모 및 내용을 대폭 변경할 수 없음

※ 공연·행사횟수·전시일수, 지휘자·연출가·극작가·안무가 등 주요 출연진·제작진, 사업장소 등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취소, 삭감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4) 교부 신청 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출연료, 원고료, 창작활동비 등)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5) 지원 신청 시 자부담을 편성하여 선정되면 확정된 지원금에 비례하여 자부담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신청 시			》	지원금 확정 시		
신청예산 (100%) (C=A+B)	신청지원금 (90%) (A)	신청자부담 (10%) (B)		확정예산 (100%) (F=D+E)	확정지원금 (90%) (D)	확정자부담 (10%) (E)
1,112만원	1,000만원	112만원이상		778만원	700만원	78만원이상

(6) 자부담은 반드시 교부신청 전 입금하고 사업기간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시 자부담 편성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교부신청 시			》	집행완료 시		
확정예산 (F=D+E)	확정지원금(D)	확정자부담(E)		실집행예산 (F=D+E)	집행지원금(D)	집행자부담(E)
778만원	700만원	78만원이상		770만원	700만원	70만원

➡ 자부담 8만원(자부담 10%) 미집행, 지원금 70만원(지원금 10%) 반납

※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용

세목	항목	세부 내용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원천세	원천세,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자부담 0.8% 한)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운영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운송비 등), 회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임차료, 사업기간 내 웹호스팅 비용 (국제교류지원사업)	장비, 물품, SW(소프트웨어) 등의 임차료 ※ 사업기간 외 장비, SW 임차 시, 비용 불인정
사용불가 항목		세부 내용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 준비비용		회의비(다과 및 식대), 간담회 등 식대 경비(주류 등) 및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각종 수수료(인증서발급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6. 심의배제 사항

- (1)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2)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3)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4)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 (5)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유형 잘못 선택)
- (6)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유형의 지원신청서 및 전년도 신청서 제출)
- (7) 지원신청서의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단체)가 주체가 아닌 경우
(대규모 행사의 부속 사업 등)

7.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1)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모내용(신청자격, 대상사업,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을 확인 후 지원 신청 바랍니다.
- (2)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지원신청자 활동실적 증빙서류가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4) 지원신청서, 필수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때 심의배제됩니다. 제출전 심의배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1 지원신청 단체(개인)는 1개 사업만 지원신청 · 선정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사업 유형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2개 사업까지 선정 · 지원됩니다.
 - ※ 중복지원사업 : 총 4개 유형
 - － 국제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제주원로예술인지원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는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 1차 공모 심의 진행 중인 경우, 2차 공모 사업 중 1개 사업만 지원신청 · 선정 가능하며 단, 2개 사업 모두 지원이 결정된 경우 1개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

(6) 한 신청인·단체는 동일 사업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여러 유형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복수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원결정 후 심의위원회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7) 공모 심의기간 중에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최종 지원결정 공지 후 재단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후 지원이 가능합니다.(선정 후 재단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8)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원신청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후
심의배제 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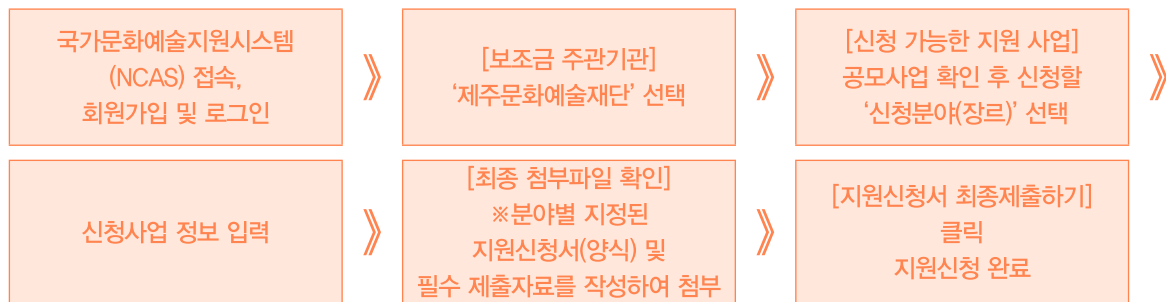
IV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안내

1. 지원신청방법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외의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단체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신청 접수시 심의배제)
 - 단체 지원신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 제주원로예술인지원사업은 '원로예술인 활동실적증빙' 우편소인 인정(21.2.17.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개인·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사항 등)
- 2021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신청부터 심의, 교부, 정산의 전체 과정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수행합니다.

※ 예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교부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2. 사용 시 유의사항

- (1)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지원시스템 신청 시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는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 단, 제출된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이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재단 담당자 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제출해야 함)
- (3)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지원사업 2차 공모 내용

/

- I.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II. 예술공간지원
- III. 제주원로예술인지원
- IV.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 V. 예술활동기록지원
- VI. 예술창작준비지원
 - i. 창작활동준비지원
 - ii. 창작역량강화지원
- VII. 국제예술교류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을 통한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세부 분야

- 연극 : 연극분야(아동극, 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 음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전통예술 :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 전문단체

신청 자격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설립연한 3년 이상(2018년 이전 설립)의 공연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 제주도에 소재하거나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
- ※ 공고일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우대

지원 대상

- 2021. 12. 10.까지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 프로그램 지원
 -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구분, 수행하여야 함
 - 수행 프로그램 공연일정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주중(평일) 일정으로 우선 배정
 - 사업 수행에 따른 '사전~중간~결과(성과)'과정에서 인터뷰, 컨설팅,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 ※ 단,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공연발표,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이 불가한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지원신청서 내 별도 항목에 작성)

구분	내용	작품수	공연횟수
필수	신작공연	•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1작품
	레퍼토리	•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1작품
	퍼블릭 프로그램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 문화나눔 :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기타 :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선정 후 공연장과 협의
선택	(도내·외)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 (도내) –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 내 교류·협력 추진 ※ 단 선정 후 공연장 – 공연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 (공연장, 일정, 규모 등) 결정,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예산 반영 • (도외) – 상주단체 페스티벌 및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교류를 통해 타 지역 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조직역량 강화	•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순 단원 공연 연습 및 단원 간 회의는 불 인정

지원
항목

항목		집행용도	집행가능 항목	편성비율	편성여부
사업비	공연단체 사업비	수행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 공연 제작 경비 - 퍼블릭 프로그램,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 프로그램 홍보마케팅비 - 기타 관련 필수 경비	50~100%	필수
	공연단체 운영경비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기획 및 행정 인력 인건비	0~30%	선택
공연장 필요경비	필요한 인건비성/ 비인건비성 경비	- 프로그램 운영, 작품제작, 홍보·마케팅, 상주공간 관리, 관객안내 등의 일용임금	0~20%	선택	

※ 법인단체의 대표자 사례비는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경우 '공연단체 사업비' 20% 내 편성 가능
※ 공연단체의 사업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매칭 후 사업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및 선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지원
규모

• 최소 8,000만원 ~ 최대 1억 2천만원

참여
공연장

• 제주 소재 공공 공연장 중 참여 공연장 현황
※ 1개 공연장 1개 공연단체 매칭 원칙
(단, 공연단체 콘텐츠 내용에 따라 공연장 변경이 불가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공연장명	객석규모	소재지	상주가능시설	비고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405석	제주시 연동	공연장	선정 후 세부사항 별 도 협의
김정문화회관	377석	서귀포시 강정동	사무실, 전시실, 공연장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60석	제주시 조천읍	사무실, 연습실, 공연장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 828석 소극장 : 고정형 70석, 가변형 100석	제주시 일도이동	공연장	

협약
체결
안내

• 심의 후 매칭이 완료되면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직접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수행 내용
공연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마케팅 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보조금 정산 총괄

협약 체결 안내

공연장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용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보조금 정산(정산 협조)
-----	---

제출 자료

구분	세부내용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운영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 - 최근 3년간(2018~2020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 단체의 성격, 설립연도를 알 수 있는 법적 증빙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연도 증빙자료는 해당 공연단체와 동일한 공연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발표 5분 이내)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 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URL 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사업 추진 및 심의 절차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수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25	- 수행 프로그램의 우수성 - 수행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수행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25	- 수행 프로그램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운영계획, 기획인력, 홍보마케팅, 관객개발 계획 등의 타당성 - 수행 프로그램 내용(횟수, 규모, 인원 등) 및 추진단계의 구체성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25	- 공연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및 성과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 및 성과(신작발표, 레퍼토리 구축, 관객개발, 예술제 참가, 수상실적 등) -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언론 및 예술전문지 공연평 등)
	사업운영 역량	25	- 공연단체의 사업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여부 - 공연단체 보유인력(예술인, 행정담당 등) 현황 및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 - 예산 계획의 타당성 - 예산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의 적절성

예술공간지원

- 민간 예술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작 거점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민간 예술공간 발굴을 통한 예술인의 발표 기회 촉진과 도민 문화접근성 확대

신청 자격

구분	지원방침	지원자격
공연예술 공간 활성화지원	• 공연예술공간 창작 발표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도내 소재 기초 공연예술 발표 공간(소극장) ※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 시설은 지원 대상 제외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을 기반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확산할 수 있는 공간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최근 3년간(2018~2020년) 2회 이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복합예술공간 ※ 상업적 카페, 갤러리 지원 불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예술인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역량 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 향유권 신장	– 기초예술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내 소재 창작공간 ※ 해당 분야 활동실적 (예시) – 지역 커뮤니티, 예술인, 기획자 등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및 협업에 의한 창작 활동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 입주작가 창작활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 2021. 12. 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반드시 전담인력(기획자 등) 1인 포함
- 사업 수행 중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공연예술공간 내 2개 이상의 기획 공연(창작발표 1개 이상, 초청가능) – 사업 수행 중 '사전~중간~결과(성과)' 과정에서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복합예술공간 내 소규모 행사(문학행사, 전시, 공연) 발표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창작공간 프로그램 내 연간 우수 기획 프로그램 – 사업 수행 중 '사전~중간~결과(성과)' 과정에서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한 사업

지원 규모

구분	지원규모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1,000만원 ~ 3,000만원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300만원 ~ 700만원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1,000만원 ~ 5,000만원

지원 항목	구분	지원항목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예술공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직접 경비 - 사업전담인력(기획자 등) 및 대표자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 대표자는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이고,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공간 운영비는 총 지원금의 10% 이내 편성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예술공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직접 경비 - 사업전담인력(기획자 등) 및 대표자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 단,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이고,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이 확인되어야 함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예술공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직접 경비 - 입주 예술가의 작품 제작 및 발표 비용 - 사업전담인력(기획자 등) 및 대표자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 단,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이고,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공간 운영비는 총 지원금의 10% 이내 편성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주 예술가의 개인 창작 활동에 필요한 아티스트피(월 60만원 이내) - 국내외 교류, 지역 주민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비용 -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필수(교부 시 별도 공지)
	편성불가항목	- 공간의 구입, 임대, 신축 및 개보수 경비 - 고정자산 취득 및 경직성 경비 - 간담회비, 식비,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 -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제출 자료	구분	세부내용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기획자 이력사항 등 기재 - 주요사업 및 부대 행사 기획서 ※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 제외 ③ (단체인 경우)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④ 시설 임차 · 소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 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시 개인, 단체명이 아닌 해당 “공간명”으로 접수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필수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심의	》	4차 토론회 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검토		PT 발표를 통한 공개 인터뷰 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 하여 평균 점수를 산술함)		사업내용 PT발표 및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 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충실성/ 기획력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예술인(단체)은 신청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고민과 시각의 차별성과 실행력 • 사업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 사업계획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공간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해당 공간의 자생력과 성장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제주원로예술인지원

- 제주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예술인 생애사 기록 및 회고사업을 통한 제주문화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세부 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신청 자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신청자격</th></tr> </thead> <tbody> <tr> <td>개인</td><td>–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td></tr> <tr> <td>단체</td><td>–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이 소속된 예술단체 또는 제주원로예술인지원 사업추진역량을 가진 제주 소재 예술단체</td></tr> </tbody> </table>	구분	신청자격	개인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	단체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이 소속된 예술단체 또는 제주원로예술인지원 사업추진역량을 가진 제주 소재 예술단체
구분	신청자격						
개인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						
단체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이 소속된 예술단체 또는 제주원로예술인지원 사업추진역량을 가진 제주 소재 예술단체						
	※ 개인·단체 모두 반드시 사업전담인력(ex 연구원, 기획자 등) 2인 이상 필수로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가능 ※ 사업전담인력(ex 연구원, 기획자 등) 이력 및 해당 원로예술인 공적 조서 필수 제출						
지원 내용	· 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 – 제주원로예술인 생애사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 '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 선정사업은 차년도 '유형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유형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 –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작품집, 회고도록 등 발간 ※ 단순한 창작집 발간은 지원 불가 – 회고작품집 및 회고도록 발간을 전제로 한 행사(출판기념회 등) 등 프로그램 ※ 제주원로예술인지원사업 선정자(단체)는 사업비 교부 전에 사업 컨설팅에 필수 참석하여야 함 (관련 사항은 사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항목	· 구술채록·활동상 아카이빙 등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은 구술채록 결과물 출판비와 영상채록비용 필수 편성 ※ 사업 완료 후 구술채록 책자, 영상자료, 행정자료는 필수 제출해야 함 · 작품집 및 작품도록 발간에 필요한 출판비 ※ 사업 완료 후 작품집 필수 제출해야 함 · 사업전담인력 인건비 · 학술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는 직접적인 활동 (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창작 사례비 편성 가능(총 지원금의 20% 이내)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상 경비는 지원 불가						
지원 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규모</th></tr> </thead> <tbody> <tr> <td>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td><td>최소 1,000만원 ~ 최대 1,500만원</td></tr> <tr> <td>유형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td><td>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지원규모	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	최소 1,000만원 ~ 최대 1,500만원	유형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구분	지원규모						
유형1. 제주원로예술인 구술채록지원	최소 1,000만원 ~ 최대 1,500만원						
유형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IV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 제주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연구·비평 활동 활성화
- 제주예술계 창작활동에 대한 담론 생산 기반 강화

세부 분야	· 연구, 비평, 학술
신청 자격	· 최근 5년간(2016~2020년) 문화예술 연구·평론 전문 간행물을 1회 이상 발간하거나 연구·평론발표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거주) 개인 또는 단체 ※ 개인 신청인 경우 2인 공동연구·집필 신청 가능 (단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하되 신청서류에 반드시 공동연구와 집필자 정보 명기)
지원 대상	· 2021.12.31.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 – 예술비평(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서적·간행물 발간 및 예술비평 관련 활동(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평활동 포함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학위논문집, 에세이, 교습서, 번역본 등 연구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작품집, 다수 연구자 저술 모음집 – 비평전문지가 아닌 일반적인 미술잡지 발간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협회지) 및 연례 학술 행사 – 전작도록, 전시도록 등 화집 발간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사업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지원 규모	· 500만원 ~ 1,000만원
지원 항목	· 비평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는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창작사례비 편성 가능 (총 지원금의 20% 이내)

구분	세부내용
제출 자료	필수 ①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용 등 기재 ② 최근 5년간(2016~2020년) 신청인(단체)의 연구·비평활동 경력 증빙자료 – (발간사업인 경우) 1건당 겉표지 1면, 목차, 발행일 표시 페이지 1면 ※ 총 3면 스캔 후 제출서식에 맞춰 이미지 넣기 ※ 해당경력 연구개요 필수 기재 – (행사 및 학술행사인 경우) 1건당 행사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신청자명, 목차 1면 ※ 해당 이미지 자료를 제출서식에 맞춰 이미지 넣기 ※ 해당경력 행사개요 필수 기재 ③ (발간사업인 경우) 발간예정 원고 1편 20페이지 이내 제출 (12pt, 휴면명조체) ④ (단체인 경우)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제출
자료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됨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1차 행정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

2차 서류 심의

지원신청서 심의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
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술함)

》

3차 토론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 사업전담인력의 역량 및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20

• 문화예술 연구 및 평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합리적이고 건강한 지역예술계 담론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V 예술활동기록지원

· 예술인(단체)의 활동경력 기록 지원을 통한 예술 아카이브 인식 제고 및 지역예술자료 구축 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예술인(단체) 스스로 예술 활동내용 기록과 결과물에 대한 지원

세부
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신청
자격

구분	지원자격
개인	- (예술활동경력 10년 이상)제주 소재(거주) 예술인(공고일 기준)
단체	-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지원
대상

- 2021. 12. 31.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 및 기록하는 사업 (인쇄물, 영상물 등 제작)
 - ※ 일회성 사업에 대한 단순기록은 해당되지 않음
 - ※ 사업내용 예시(참고자료)
 - 예술인(단체)의 작품세계 및 작품활동 등 작업 전반을 기록하는 작품집 발간
 - 예술인(단체)의 참여작품의 대본 및 홍보물을 시기별로 정리한 기록집 발간
 - 예술단체의 대표 사업을 포함한 활동상을 기록한 자료집 발간
 - 예술단체의 소속 원로 및 현재 회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록 영상 제작
 - 예술인(단체)가 발표한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포트폴리오성 영상편집 및 제작
- ※ 내실있는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기획자, 아키비스트, 평론가 등)와의 협업 권장
- ※ 결과물: 책자에 준하는 보고서 및 디지털자료(세부내용은 지원선정 후 별도 공지)
 - 서적 발간 시 ISBN 등록 필수이며, DVD 등의 영상물 부록 제작 가능
- ※ 기록물 저작권 · 사용권 관련
 - 연출가 · 작가 · 비평가 · 실연자 등 기록물과 연관된 저작권 · 사용권 문제는 지원신청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지원신청 시에는 서약서, 선정 이후에는 관련 계약서 필수 제출)
 - (지원선정 후 재단에서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가능)
- ※ 지원선정 후 사업설명회 · 컨설팅 예정
- ※ 지원선정자(단체)는 재단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등 필수 참석

지원
항목

- 사업수행이 필요한 직접 경비(사례비, 인쇄비, 제작비 등 편성)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지원
규모

- 300만원~700만원

제출
자료

구분		세부내용
개 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활동내용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첨부로 대체 가능) 등 기재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단체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활동내용 등 기재 ② 최근 3년간(2018~2020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③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됨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토론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사업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실행가능성 /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 예술인(단체)의 활동실적을 고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20	• 사업계획은 예술인(단체)의 활동 기록을 활성화하고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VI 예술창작준비지원

· 예술인(단체)의 창작준비과정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촉진 및 창작 기반 확장

i. 창작활동준비지원

– 창작 발표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예술창작활동 기회 제공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개인	－ 예술활동경력 10년 이상 제주소재(거주) 예술인(공고일 기준)
단체	－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지원
대상

- 2021.12.31.까지 완료 가능한 기초예술분야의 기획, 조사, 연구 등 준비과정 지원
- － 기초예술분야(공연, 시각, 문학 등)의 각종 창작활동에 따른 준비 활동
- － 사전 제작 단계, 창작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계획 수립 이전 구상 단계 지원

(예시) △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실험적 기획
 △ 창작발표를 위한 사전 워크숍, 인터뷰, 리서치 및 연구 등
 △ 제주 지역 예술프로젝트를 위한 콘텐츠 조사 및 발굴 작업

지원
규모

구분	신청자격
개인	－ 사업당 200만원(정액지원)
단체	－ 사업당 300만원(정액지원)

지원
항목

- 창작 준비 활동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70% 이상)
(제작비, 재료비, 출연료, 사례비, 임차료, 홍보비 등)
- 창작활동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30% 이내)
(사무용품 또는 소모성 비품 구입, 전담인력 사례비 등)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 경상 경비는 지원 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총 지원금 10% 내 편성 가능

제출
자료

구분		세부내용
개 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활동내용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첨부로 대체 가능) 등 기재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단 체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활동내용 등 기재 ② 최근 5년간(2016~2020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③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URL 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토론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 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의 충실성/기획력	30	• 사업 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예술인(단체)은 신청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창작활동에 대한 예술적 고민과 접근이 얼마나 실험적이고 참신한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만 한가?
기대되는 성과 및 발전가능성	30	• 추후 창작활동을 통해 신청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창작활동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ii. 창작역량강화지원

－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예술활동 역량 제고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단체	－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원 해당분야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 단체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2021.12.31.까지 완료 가능한 기초예술분야의 예술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예술단체 소속 기획인력의 예술경영(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 자체워크숍, 컨퍼런스, 컨설팅, 교육, CoP(학습공동체)운영 등	
지원 규모	• 사업당 500만원 (정액지원)	
지원 항목	• 창작 준비 활동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70% 이상) (제작비, 재료비, 출연료, 사례비, 임차료, 홍보비 등) • 창작활동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30% 이내) (사무용품 또는 소모성 비품 구입, 전담인력 사례비 등)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 경상 경비는 지원 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기획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총 지원금 10% 내 편성 가능	
제출 자료	구분	세부내용
	개 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활동내용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첨부로 대체 가능) 등 기재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 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단 체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활동내용 등 기재 ② 최근 5년간(2016~2020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③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 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URL 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토론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술함)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의 충실성/기획력	30	• 사업 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예술인(단체)은 신청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창작활동에 대한 예술적 고민과 접근이 얼마나 실험적이고 참신한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만 한가?
기대되는 성과 및 발전가능성	30	• 추후 창작활동을 통해 신청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창작활동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VII 국제예술교류지원

- 국내 · 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예술교류활동을 지원, 예술인(단체)의 창작 · 발표 기회 부여 및 예술역량 강화
- 예술인(단체)의 국제적인 활동 기반 구축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개인	-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원 해당 분야 기획 경력이 2회 이상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
	단체	-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원 해당분야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제주 소재 예술단체
지원 대상	· 2021.12.31.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 - 공신력 있는 국외 기관, 단체와 공동제작 및 발표 - 국외에서 개최하는 예술사업 참가(공연, 전시, 세미나, 비엔날레, 워크숍, 축제 등) - 국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예술가(단체) 및 국외기관, 단체와 공동제작 및 발표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친목 성격의 초청성 교류 행사 - 단순 초청으로 구성된 형식적 교류활동 -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형태의 사업 등	
지원 규모	· 최대 2,000만원	
지원 항목	·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행사홍보비, 사례비, 장소대관료, 임차료, 통 · 번역비, 국외여비 (항공료, 현지숙박비, 교통비) 참가비용 등	
	1) 국내여비	- 국내 도시 간 항공료(제주 - 사업 파트너간 국가(도시)간 직항 노선이 없을 경우)
	2) 국외여비	- 항공료: 한국 - 사업 파트너 간 국가(도시)간 국제 항공료(※ 이코노미석 기준) - 숙박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숙박비(현지에서 사용되는 식비 예산편성 불가) - 현지교통비: 현지 체류기간 중 교통비
	3) 임차료	- 온라인 기반 사업 진행시 사업 기간내 웹 호스팅 비용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는 직접적인 활동 (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창작사례비 편성 가능(총 지원금의 20% 이내) ※ 해외 입출국 시, 코로나 19관련 국가별 조치에 따른 자가격리 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출 자료	구분	세부내용
	필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1년 사업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용 등 기재 ※ 코로나 19 심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 ② 초청(교류) 단체 연혁 및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활동 내용 ③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내용이 명기된 초청(교류) 기관이 작성한 사업 기술서 ※ 현재 지원상태로 선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으로 제출한 지원서 제출 ④ 사업 추진 확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초청장, 협약서, 공동사업추진계약서, 계약서 등

제출 자료	⑤ 최근 3년간(2018~2020년) 신청인(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⑥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⑦ (단체인 경우)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선택 ①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 ※ URL 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됨
- 첨부파일(URL 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 > 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필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류 심의 지원신청서 검토	3차 인터뷰 심의 PT 발표를 통한 공개 인터뷰 심의	4차 토론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 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사업내용 PT발표 및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 기준	심 의 지 표	가 중 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예술인(단체)은 신청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파트너는 해당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한가?

제주문화예술재단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Tel. (예술지원팀) 064-800-9131~5

(미래문화팀) 064-800-9151~9

(일상문화팀) 064-800-9161~4

(지역문화팀) 064-800-9141~5

Fax.064.800.910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02-6676-5100